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남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2023년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임.

1. 제안이유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제설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보험 가입 및 유류비 등의 지원책의 마련으로 봉사자를 보호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사기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설장비의 보관 및 관리(안 제3조 ~ 제4조)

나. 제설장비의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안 제5조 ~ 제6조)

다.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보험가입 및 지원(안 제7조 ~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제설장비의 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사고 공제 및 보험 가입,

유류비 및 식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설 외 공익과 관련된 작업 등에 관리자 허락을 받아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입법례: 전국 4개 지자체, 도 내 1개 군(홍천)